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14-108
----------	--------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음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함.

2. 음부즈만 선정자 (위촉 동의 대상자)

(가나다순)

연번	성명(성별)	연령	최종학력	주요경력	비고
1	김순도	만51세	한양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그룹예상건축사 대표 (2001 ~ 현재)	
2	김철기	만51세	고려대학교	법무법인 세상 대표 (2012.2. ~ 현재)	
3	이수복	만61세	서강대학교 대학원	마포구근무 (1981.8~2013.1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음부즈만 구성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부즈만 위촉 동의안	감사담당관	1

(2014. 12.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7일(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11월 21일(금)

4.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제안이유 >

- 동 위촉 동의안은 2014.4.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 3인을 공개모집 선정하고, 구의회 동의록을 얻어 구청장이 마포구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제출된 것임.

< 옴부즈만 선정 및 향후 계획 >

- 옴부즈만 조례 제정 : 2014. 4. 24.
- 옴부즈만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4. 10. 16.
- 옴부즈만 공개모집 : 2014. 11. 3. ~ 11. 7.
-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14. 11. 14.
 - 위촉대상자 결정 : 채점표에 의한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 서류심사로 결정,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심사결과 : 3명 선정(김순도, 김철기, 이수복)
- 옴부즈만 위촉 : 2014. 12월 중
- 옴부즈만 운영 : 2015. 1월 ~12월
 - 소요예산 : 3,570만원
 - (수당 : 2,880만원, 장비임차료 : 330만원, 업무추진비 : 360만원)

< 옴부즈만 주요업무 >

-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상시적 감시·평가 등

< 옴부즈만 선정자 명단 >

연번	성명(성별)	연령	최종학력	최근 경력
1	김순도(남)	만51세	한양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그룹예상건축사대표 (2001~현재)
2	김철기(남)	만51세	고려대학교	법무법인세강 대표 (2012.2.~현재)
3	이수복(남)	만61세	서강대학교 대학원	마포구 근무 (1981.8~2013.12)

[검토의견]

- 동 위촉 동의안은 2014.4.2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 11. 3. ~ 11. 7일까지 5일간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 결과, 5명이 지원하여 2014. 11.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결과 3명의 옴부즈만이 선정되어 구의회를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제출된 위촉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1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구정참여 확대)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임기만료로 옴부즈만을 새로 선임할 때에는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여성 옴부즈만에 선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여 여성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서울지역 음부즈만 운영현황

구분	서울시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북구	마포구
구성 및 자리	-계약직 7명 -독립적 업무 수행	-비상임 2명 -구청장 소속 -독립적 업무 수행	-계약직 3명 -독립기구	-비상임 5명 -구청장 소속 -독립적 업무 수행	-비상임 3명 -구청장소속 -독립적 업무 수행	-비상임 5명 -구청장소속 -독립적 업무 수행	-비상임 3명 -구청장 소속 -독립적 업무 수행
위촉 방법	-공 개 모 집 -시장이 임용	-공 개 모 집 -구의회 동의 구청장 위촉	-공 개 모 집 -구의회 동의 구청장 위촉	-공 개 모 집 -구의회 동의 구청장 위촉	-공 개 모 집 자치기본위원회 구청장 위촉	-공 개 모 집 산발삼시위원회 구청장 위촉	-공 개 모 집 -구의회 동의 구청장 위촉
지급 액	연봉 약4,200만원	활동경비 (1일 10만원)	연봉 약 2,700만원	활동경비 (1일 10만원)	활동경비 (1일 10만원)	활동경비 (1일 10만원)	활동경비 (1일 10만원)